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일자 : 2014.01.09

개정일자 : 2016.08.10

개정일자 : 2017.11.03

개정일자 : 2019.01.17

개정일자 : 2020.04.16

제1조 (목적)

본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) 제58조에 근거하여 비엔비자산운용(주)(이하 '회사'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간 형평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등(이하 '관련법규')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<개정 2020.04.16>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문·일임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, 판매 및 관리등에 대한 보수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(성과보수의 제한), 법시행령 제88조(성과보수의 제한)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
다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

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라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마. 일반사무관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
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2. 수수료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자문·일임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 목과 같다.

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받는 금정으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: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
다. 투자 자문·일임 기본수수료: 투자자와 투자 자문·일임 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받는 보수

라. 투자 자문·일임 성과수수료: 투자자와 투자 자문·일임 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

제4조 (수수료 의 부과기준)

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수수료는 계약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, 성과수수료 부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04.16>

③ <삭제> <개정 2020.04.16>

제4조의 2 (수수료의 부과절차) <개정 2020.04.16>

- ① 수수료의 수준은 계약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신탁계약서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투자 자문·일임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 자문·일임 계약서에 따른다.

제5조 (설명 의무)
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문 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공시 및 통보)

-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시기,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04.16>

부 칙(1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1] <삭제> <개정 2020.04.16>